

생활관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규율과 질서가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) 생활관의 명칭은 대신대학교 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3조(개관기간) 생활관 개관 기간은 본교 개학 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이 필요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, 방학 기간 중에도 입주할 수 있다. 단 입주 희망 학생이 극소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방학 중에는 폐관할 수 있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 4조(설치)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5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, 위원은 학생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한다.
2.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위촉기간의 만료 시까지로 한다.

제 6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보고, 결산에 관한 사항
3.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7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주요업무를 심의할 경우 해당 소속직원과 사생회 대표를 반드시 참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.

제3장 조직

제 8조(조직)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을 둔다.

- ② 생활관에는 학생대표를 두고 제1생활관(남), 제2생활관(여)의 대표를 둔다.
- ③ 학생자치기구인 사생회를 조직하여 쾌적한 사생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.
- ④ 사목을 두어 학생들의 영적지도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.

제 9조(생활관장)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을 운영·유지한다.

- ② 생활관장은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,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

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생활관장은 생활관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업무분장) 생활관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입사 및 퇴사

제11조(입사자격) 생활관에 입사(入舍)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제12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
3.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4. 휴학중인 자
5.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(퇴사·퇴사처분) ① 학기중에 생활관을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5일 전에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퇴사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생수칙의 위반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자
2.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3. 기타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4조(납부금) ① 사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공고한 제 납입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생 수칙

제15조(경건훈련) 사생은 생활관이 학생들의 신앙 및 인격도야를 위해 실시하는 새벽 기도회, 삼일기도회 및 기타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자기성숙을 도모해야 한다.

제16조(규율 및 의무)

1. 생활관 내에서 관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도 가질 수 없다.
2. 사생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생활관 내에서 숙식할 수 없다. 단, 관장이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3. 사생은 자기방 및 주변환경을 청결케 하여야 한다.
4. 모든 사생은 외출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3시까지 귀관 하여야 한다.
5. 사생은 생활관내 기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금지행위)

1. 음주, 흡연, 도박행위
2.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반입
3. 폭행,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4.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
5. 고의적인 기물파손 행위
6. 낙서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
7. 기타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

제18조(징계) 사생으로서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검토한 후, 학칙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을 징계 처분하도록 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